

## 할당관세 규정 일부개정 및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

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수량에 한해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. 2023년 6월 1일 「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」 일부 개정에 따라 할당관세 세율 변경 및 적용기한 연장과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이 공고되어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 I. 「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」 주요내용

할당관세 품목	상세품명 및 규격	세번부호(HSK)	관세율 구분	적용기간
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(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이상인 것)	조주정	2207.10-1000	P1	2023.07.01. ~2023.12.31.
고등어	중량이 300그램 이상인 것	0303.54-0000	P1	2023.06.01. ~2023.08.31.
돼지고기(산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)	삼겹살 기타	0203.19-1000 0203.19-9000	P1 P1	2023.06.01. ~2023.12.31.
돼지고기(냉동한 것)	삼겹살 기타	0203.29-1000 0203.29-9000	P1 P1	
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,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(조당, 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것)	사탕무당(편광도수가 98.5도 이하인 것)	1701.12-1000	P3	
	사탕무당(편광도수가 98.5도를 초과하는 것)	1701.12-2000	P3	
	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	1701.13-0000	P3	
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,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(조당, 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것)	그 밖의 사탕수수당(편광도수가 98.5도 이하인 것)	1701.14-1000	P3	
	그 밖의 사탕수수당(편광도수가 98.5도를 초과하는 것)	1701.14-2000	P3	
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,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(기타)	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	1701.91-0000	P1	
	기타	1701.99-0000	P1	
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	사료용	2303.30-1000	P1	
오일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(팜 너트나 핵에서 나온 것)	사료용	2306.60-0000	P1	

## II.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

### 1. 수입신고지연 가산세

#### (1) 부과대상

다음의 물품 중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어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한 물품

가산세 부과대상
1. 「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」 [별표 1]에서 규정한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
2. 할당관세 적용 물품 중에서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 (목차 2. 할당관세품목 참고)

#### (2) 가산세

기준	가산세율
신고기간이 경과한 날 ~ 20일내 신고	과세가격의 0.5%
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~ 50일내 신고	과세가격의 1.0%
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~ 80일내 신고	과세가격의 1.5%
이외의 경우	과세가격의 2.0%

### 2. 할당관세 품목

상기 I. 「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」 주요내용과 동일

### III. 첨부자료 (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.)

[붙임1] 할당관세세율(용도세율)

[붙임2]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(관세청공고 제2023-97호)

### IV. Contact



유다에 관세사

T 070-4353-1588

E dyyoo@esein.co.kr



정승은 관세사

T 070-4353-5150

E sejeong@esein.co.kr